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정계획 공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9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등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일
산업통상부 장관

1. 지정 개요

가. 사업 목적

-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함으로써 DX·AX 컨설팅, 공급·수요기업 매칭, 글로벌 진출 등 기업의 DX·AX를 One-Stop 밀착 지원

나. 사업 내용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근거)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전환기업 등의 협업 지원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 선도사업 지원, 교육 및 홍보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역량 제고 : 정보 제공, 상담·자문, 전문인력양성 지원, 컨설팅·실증 지원 등
-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 표준화, 품질관리, 거래 활성화 지원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회사 지원

다. 관련 규정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9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 향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26.7월 시행)에 따라 "산업 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라. 지정 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마. 2026년 사업비 지원규모 : 국비 2억원

※ 지자체 지방비 매칭 시 우대

※ 연단위로 협약하되, 지원규모는 당해연도 예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년도 성과실적에 따라 기관별 차등 배분 가능

바. 지정 개소 : 1개소

2. 공모 개요

가. 신청 자격 : 다음 요건을 갖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소재 비영리기관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역

나. 신청 요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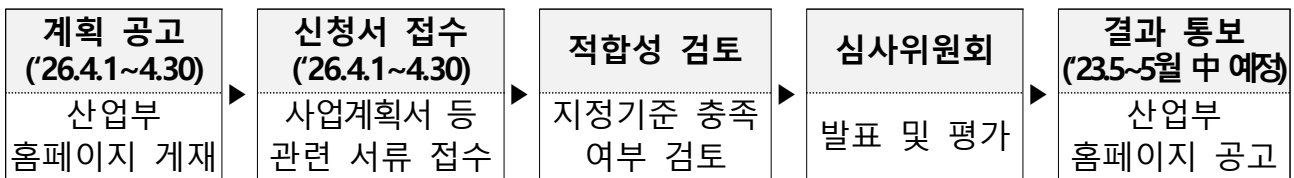
○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한 법인·기관 및 단체

< 전문인력 조건 :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근거 >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기관 및 단체

다. 지정절차 및 추진일정



※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

라. 기타 사항

- 본 공모는 협업지원센터 운영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함이며, 정부지원금 및 수행사업 등은 기관 선정 이후 협약단계에서 최종 확정
- 제출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사안에 따라 정부지원금 조정 또는 협업지원센터 지정 취소도 가능

3. 신청 방법

가. 신청 기한 : 공고일로부터 2026.4.30.(목) 17:00까지

※ 구비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접수 반려

나.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공문 포함) ※(신청기간[마감시간 엄수]까지 제출분 유효)

※ 서명·날인이 필요한 각 서식을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의 스캔파일(PDF)과 ‘사업 계획서’ 등 제출서류 일체를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필수)

(→ 접수처(연락처)로 연락하여, 이메일 수신확인 및 제출서류 접수 요청)

※ 상용 메일의 대용량 첨부파일로 전환된 파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파일 전송 시, 기관 보안 정책으로 인해 수신 불가하므로 일반 첨부로 발송 요망

다.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접수처	이메일 주소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공지능혁신실	mmmj3@kiat.or.kr	02-6009-3645

※ 팩스·우편(방문) 제출은 불가, 전자우편 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요망

라.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공지능혁신실 이민진 책임연구원
(Tel : 02-6009-3645 / e-mail : mmmj3@kiat.or.kr)
* 산업통상부 산업인공지능정책과 (Tel : 044-203-3834)

마.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No.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	1	붙임1
2	사업계획서 전담인력의 보유현황 및 배치계획서 (사업계획서에 포함)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활용계획서 (사업계획서에 포함)	10	붙임2
3	증빙 및 기타서류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산업 DX·AX 연구·협업지원 사업실적, 투자계획 등을 확인 가능한 증명 서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사업자 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10 1	 붙임3 붙임4

4. 선정절차 및 기준

가. (1차) 서류검토 : 지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
나. (2차) 심사위원회 : 신청기관별 대면발표(20분) 및 질의응답(15분)
다. 심사 기준

심사 항목	심사 내용	배점
1.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적극성 및 적절성(15) * 사업수행을 위한 자체 예산투자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등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10)	25
2.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 기관 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담 조직 운영 여부(10) · 기관 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보유현황(10) ·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여부(10)	30
3. 전문성 및 기술력	· 최근 2년 이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분야 사업 실적(10)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분야 연구실적(10)	20
4. 산업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 역량	· 기업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관련 경험(10)·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 네트워크 확보 여부(5) · 유관기관과의 협업 방안 제시 여부 및 실현가능성(5)	20
5. 기타 제안사항	· 사업목적과 연관된 기관의 특화된 제안사항 기재(5)	5

※ 센터 운영과 관련 지방비 기여도가 높은 경우, 기여도에 따라 최대 +3점 가점
→ (국비 대비 지방비 10~50% 1점, 50~100% 2점, 100% 이상 3점)

라. 결과 통보 :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공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열람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운영예정일			

사무소 소재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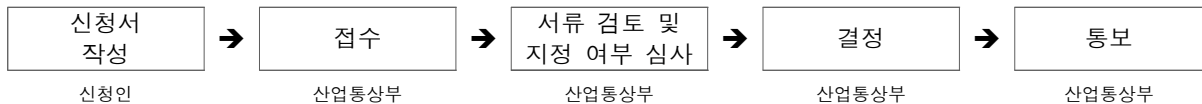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음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유의사항

- 지정기준에 따른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성
- 제출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자료는 수정할 수 없음
- 사업계획서는 A4규격, 100쪽 이내로 자유 양식으로 작성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예시)

1. 사업 개요 (해당 지역에 필요한 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나. 필요성

2. 사업 목표 및 세부내용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협업지원센터 업무)와 관련지어 서술)

가. 사업 목표

(본 사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량적·정성적 목표, 최종산출물, 향후 지속 방향 등 서술)

구분	목표	산출물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나. 세부 사업내용 (연차별, 분야별 세부사업 내용 서술)

다. 조직·인력·예산·시설 운영 및 확보계획(사업별 인력, 일정표 포함)

라. 성과관리 방안

마.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바. 제안사항

등 신청기관이 센터 지정 후 산업디지털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 지원을 수행할 목표 및 계획이 확인 가능한 내용

3. 참고자료

※ 사업수행기관의 기본요건

가. 신청기관의 설립목적 및 근거법

나. 신청기관 내 산업디지털·인공지능 관련 조직 및 보유 전문인력 현황

다. 산업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관련 주요 추진 실적(최근 2년내)

라. 관련 보유 시설 목록 및 향후 운용 방안

등 신청기관의 산업디지털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역량이 확인 가능한 내용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정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지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과 그 외 기재 내용 일체
-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는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위한 심사를 위하여 활용 예정이며,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관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보관하며, 수집·이용 및 제공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동의 (자필서명)

2026년 월 일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신청 기관명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현금·현물부담금을 아래의 사항대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연차별 현금 납입 및 현물 부담(확약)

(단위 : 천원)

항 목	년 차	1단계					계
		1차년도 (202 년)	2차년도 (202 년)	3차년도 (202 년)	4차년도 (202 년)	5차년도 (202 년)	
현 금							
현 물							
계							

2. 연차별 현물 부담금액 및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1단계				
		1차년도 (202 년)	2차년도 (202 년)	3차년도 (202 년)	4차년도 (202 년)	5차년도 (202 년)
인 건 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연구시설· 장비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연구재료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연구활동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간접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계						

* 별첨 : 현물납입 내역 관련 증빙서류

2026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명)

(단체장명)

(인)

직인

산업통상부 장관 귀하